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  
2014.9.16(화) 10:00

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나기성

#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9월 5일

나. 회부일자 : 2014년 9월 11일

3. 제안 이유

- 충청북도내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,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
4. 주요내용

가.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의 수립 (안 제4조)

-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,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

나. 일자리 창출 사업 (안 제5조)

-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, 생산적·경제적 일자리,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등

다. 취업지원 사업 (안 제6조)

- 구인·구직 취업서비스 제공, 기업수요 맞춤형 취업지원 등

라.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(안 제7조)

-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 설치, 취업상담 및 알선,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관리 등 기능 수행

마.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(안 제8조)

-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시행, 인증서 교부 및 「충청북도 기업 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우대

바. 기관·단체와의 협력 등 (안 제9조)

- 중앙행정기관, 시·군, 일자리 관련 기관·단체와 협력 및 협약 체결 등

사. 사무의 위탁 (안 제10조)

- 효율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무 위탁 가능

아.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 (안 제11조)

- 일자리 사업 수행·고용 확대에 기여한 기관·단체에 대한 지원

자. 포상 (안 제12조)

-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, 기관·단체 등 포상

## 5. 검토의견

- ‘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’은 도내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,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- 먼저 조례안의 입안형식인 조례의 필요성, 법 적합성, 내용의 통

일성 및 조화성, 표현의 명료성 등의 기준으로 조례의 체계를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,

- 따라서 동 조례안이 제정되어 운영됨으로써 일자리 창출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제정은 적절함
- 다만, 안 제7조에 일자리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, 둘째 연도별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매년 도비 1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에 따른 예산확보 계획과 국비는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